

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

일반 인정기준

인정분야	세부내용
1. 해당 외국의 제도	(1-1)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(자격)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(1-2) 국적에 따른 면허(자격)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
2. 학사운영	(2-1)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(2-2)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 (2-3)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
3. 학사관리	(3-1) 외국인의 (편)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(3-2)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(특별반)이 없으며,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
4. 신청자 개인	(4-1)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·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 (4-2) 전체 수학한 학기(년)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 (4-3)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,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 (4-4)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 (4-5) 해당 면허(자격)를 취득할 것(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또는 자격)

교육과정 인정기준

최소 수업연한	필수전공 교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	최소 실습학점
2년제 대학	① 필수전공 교과목 :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* * 1. 기초 동물보건학, 2. 예방 동물보건학, 3. 임상 동물보건학, 4. 동물 보건·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② 최소 이수학점 : 40학점* *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72학점	18학점